

##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새마을사업”을 “새마을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이하 새마을사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제1호 및 제7호”를 “제1호,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로 하고, “제1호”를 “제1호 및 제8호”로 하며, 동항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 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신축, 개축 및 개량을 포함한다) 및 토지

동조 제2항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 제1호 제8호”로 하고 동항 나 호중 “주택개량”을 “주택개량(신축 및 개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새마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목적) 새마을사업,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이하 새마을사업 등이라 한다.)
제 2조(면제대상) ①제1호 및 제7호에 게기하는 취득과 등기, 등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제2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새로이 취득한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사업시행 이전의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 또는 연면적에 대하여는 따로이 과세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그 부속 토지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하여 따로이 과세하며, 제7호의 경우	제 2조(면제대상) ①제1호, 제7호 및 제8호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  제1호 및 제8호

현 행	개 정 안
는 새로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는 따로이 과세한다.	..... ..... ..... .....
1-7. (생 략)  <u>(신 설)</u>	1-7. (현행과 같음)  8.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중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신축, 개축 및 개량을 포함한다) 및 토지
②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 제1항 제1호 및 제8호 .....
가. (생략)  나.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한 경우(이하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 주택 개량(신축 및 개축을 포함한다) .....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제3조-제5조 (생략)	제3조-제5조 (현행과 같음)